
2023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2023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신청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I 2023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1 운영개요

○ 관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대상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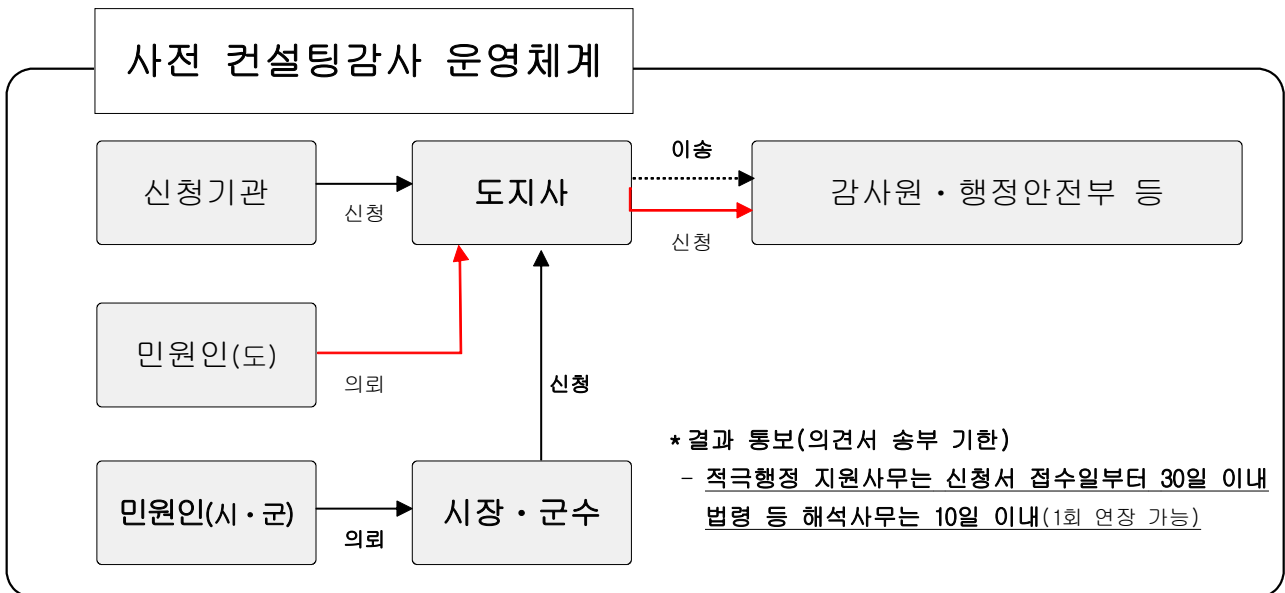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무	
적극행정 지원사무	· 인가·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법령 등 해석사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제외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1.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가·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단순 법령해석이나 제도(법령)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조사·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4.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사항
5. 적극행정이거나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 자문 유권해석 사례·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
6. 이미 처분이 완료되어 변경·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7. 단순 민원 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신청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방법

- (기관) 신청 기관의 장이 신청(도 본청·소속기관, 22개 시·군 등)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민원인) 도, 시·군에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를 신청한 자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의뢰
 - ▶ 도 소관사무 → 도지사, 시·군 소관사무 →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의뢰받은 기관 지체없이 의뢰서와 함께 신청서 도 감사관실 제출
-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감사기구에 이송
 -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의견서 송부 기한 준수 의무)	
적극행정 지원사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
법령 등 해석사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연장 가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반영 결과 제출 의무 이행
 - 신청기관의 장은 감사관에게 ‘조치 결과 통보서’를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 감사 면제 가능
 -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연계
 -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 관계 등)가 없으면 면책 기준 충족으로 추정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연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이행에 따른 면책 기준)	
사안의 동일성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받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정보 제공의 충분성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받았을 것
사적 이해관계의 배제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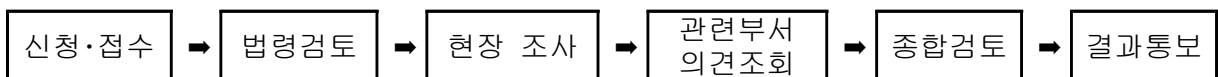
② 운영계획

○ 기본 방침

- 수요자 중심의 업무 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 도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 제시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방향

- 2023년 목표 설정 : 80건(정부합동평가 목표 대비 상향 설정)
 - 2024년 정부합동평가(2023년 실적) 목표 76건
- 의견 제시율 제고 : 40% 이상(2022년 33%→2023년 40% 이상)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전 사전 협의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여부 및 신청 기관 자체 검토 이행 여부 확인
 - ▶ 사전 협의 없이 책임회피성 신청 건 반려 및 실적 불인정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내실화



- ▶ 의견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반려 건도 대안 제시로 적극행정 유도

○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실태 점검

- (시기) 분기별 1회(3월·6월·9월·12월 등 분기말)
- (대상) 의견제시 및 반려 건 중 대안 제시 건
 - 2023년 1분기 점검 시 2022년 의견제시 및 반려 건 포함하여 점검
- (주요 내용)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이행 결과 통보서 제출 여부 및 이행내용 확인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불수용 사유 및 적법성 확인
 - 신청서 반려 건 중 대안 제시한 내용 업무 반영 여부 등

○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2월~12월)

- 2023년 道 종합감사 대상 18개 기관
 - 기간·장소 : 종합감사 기간 중 3일~5일, 종합감사장 내

2023년 道 종합감사 대상기관(18개)		
시·군	6개	여수시,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소속기관	7개	해양수산과학원,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종자관리소, 해외통상사무소
출자기관·출연기관	5개	인재평생교육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 2023년 道 종합감사 비대상 기관 방문 상담창구 운영
 - 기간 : 기관별 1~2일 이내, 2023년 2월~12월 기간 중 수시 운영
 - 대상 : 2023년 종합감사 비대상 및 2024년 종합감사가 예정되지 않은 기관
 - 내용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발굴, 적극행정 지원 제도 안내 등

○ 사례집 책자 발간

- (대상)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제시 사례
 - 적극행정 면책 : 2021년~2023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건
 - 사전 컨설팅감사 : 2022년~2023년 상반기까지 의견제시한 건
- (시기) 2023년 10월 발간
- (수량) 200부
- (예산) 7백만원(본예산 사무관리비 또는 추경 예산 확보)
- (활용) 도 감사 대상기관 배포, 정보 공유, 적극행정 유도 등

II

추진 일정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수립·통지 : 2023. 1. 13.
-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 2023. 2. 1.~12. 31.
- 공감시스템 및 도 누리집 결과 등록 : 2023. 2. 1.~12. 31.
- 이행실태 점검 : 2023년 매분기 말

III

참고 자료

- 연도별(2015년~2022년)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붙임 1)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붙임 2)
- 사전 컨설팅감사 자료수집 관련 사이트(붙임 3)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서식(붙임 4)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서식(붙임 5)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서식(붙임 6)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 서식(붙임 7)

[붙임 1]

연도별(2015년 ~ 2022년) 사전 컨설팅감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까지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사업	인화
합계	122	30	92	86	61	25	93	60	33	118	61	57	83	27	56	87	39	48	62	32	30
도	22	3	19	9	8	1	20	17	3	22	14	8	3	1	2	6	4	2	8	4	4
목포	6	-	6	4	3	1	4	2	2	3	1	2	4	-	4	1	1	-	3	3	-
여수	10	2	8	6	5	1	7	3	4	9	2	7	6	2	4	7	3	4	4	-	4
순천	6	1	5	4	3	1	6	2	4	5	3	2	4	3	1	2	2	-	0	-	-
나주	7	2	5	5	2	3	6	4	2	5	2	3	4	1	3	3	-	3	4	1	3
광양	8	3	5	4	4	-	6	4	2	8	5	3	4	1	3	3	1	2	2	2	-
담양	3	1	2	3	1	2	3	-	3	2	-	2	3	-	3	5	-	5	0	-	-
곡성	4	1	3	-	-	-	2	2	-	2	1	1	2	1	1	2	2	-	2	-	2
구례	2	-	2	4	2	2	3	3	-	4	4	-	1	1	-	1	1	-	0	-	-
고흥	4	1	3	-	-	-	1	1	-	5	4	1	4	-	4	2	1	1	4	-	4
보성	3	-	3	-	-	-	4	2	2	5	2	3	6	1	5	4	4	-	3	3	-
화순	3	2	1	3	3	-	3	2	1	4	1	3	3	2	1	1	1	-	1	-	1
장흥	3	1	2	13	9	4	3	2	1	6	4	2	3	2	1	7	5	2	2	1	1
강진	3	-	3	3	2	1	4	3	1	6	4	2	1	1	-	4	2	2	3	3	-
해남	4	1	3	2	2	-	3	2	1	1	1	-	3	-	3	3	2	1	1	1	-
영암	3	1	2	3	1	2	1	-	1	2	-	2	3	1	2	5	3	2	7	6	1
무안	6	2	4	4	2	2	2	2	-	2	1	1	5	3	2	2	-	2	3	-	3
함평	4	2	2	6	5	1	3	2	1	5	1	4	7	1	6	5	1	4	3	2	1
영광	4	2	2	4	2	2	1	-	1	6	1	5	4	1	3	3	1	2	4	1	3
장성	3	-	3	3	2	1	3	3	-	6	2	4	4	2	2	7	3	4	2	-	2
완도	6	1	5	1	1	-	3	1	2	5	4	1	4	2	2	9	1	8	1	1	-
진도	5	3	2	3	2	1	2	-	2	3	2	1	4	-	4	5	1	4	0	-	-
신안	3	1	2	2	2	-	3	3	-	2	2	-	1	1	-	0	-	-	5	4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

소관	기관명			
	총괄부서 <small>(다수부서일 경우)</small>		성명	
			전화번호	
	요청부서		성명	
			전화번호	

건명(대상 업무)		
업무 구분	적극행정 지원[<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원 · 규제완화[<input type="checkbox"/>]

구분	체크사항	O/X	비 고
일반	▶ 대상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필수
	▶ 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 대상 업무의 실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필수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 문제 해결방안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 문제 해결방안이 다른 사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등에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첨부
	▶ 대상 업무에 대한 상급 기관의 추진지침이 있는지		관련 지침 첨부
	▶ 대상 업무에 적용할 근거가 될 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질의회신)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 상기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사 사례	▶ 대상 업무와 유사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 타 시도(시군)의 경우 포함		
	▶ 대상 업무와 유사한 감사 처분사례가 있는지		
기타	▶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견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 대상 업무의 문제해결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관련 자료 첨부

*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붙임 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기관 (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련 법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그 밖의 사항(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명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붙임 5]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제5조의2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인·허가등 건명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붙임 6]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제7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검토 의견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붙임 7]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제9조제1항 관련)

주관부서		접수번호	
건 명			

1. 컨설팅 개요

-
-
-

2.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 사유 기재

-
-
-
-

